

서울캠퍼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 규정

제정 : 2011.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109조에 따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의 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종사자”이라 함은 교·직원, 학생, 연구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종사자가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보상하며, 학생 및 연구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제6조(보상의무) 본교는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본교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본인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장애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본교와 피해 당사자(이하 ‘양측’이라 한다)”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측은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양측은 분쟁중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양측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 본교 종사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